

# 「圖書館局」新設을 提唱한다

—劃期的인 發展을 이룩하기 爲하여—



緒論

무릇 어떠한 일이든지組織의이 아니면所期의目的을達成할수 없고 또 큰效果도期待하기 어려운것은當然한 일이다. 지난十餘年間의 우리나라實情은每事が計劃이 없었으며, 더욱이文化事業은이루 말할수 없을程度로貧困한政策과甚少한處事로 말미아마發展은커녕도리어衰頹해버렸다는事實亦是否認할수 없는일이다.

筆者는 여기서全面的으로政府의施策에對하여批判코자하는것은아니다. 다만그中에서우리圖書館人들과密接한關係를 가지고 있는部分만을 들어論述하고多少의批判을加함으로써過去를回顧하고將來의施策面에反映되기를바라면서이글을쓰는바이다.

1948年7月法律第1號로써公布된政府組織法은 그後3次의改正을거쳐1956年2月法律第384號로써改正公布되었다. 이法은全文32條로되어 있으며 그中文敎部에關係되는것을살펴보면總務課와普通敎育局,高等教育局,技術敎育局,文化局및編修局으로構成되어 있고圖書館關係는文化局에所屬되어 있다.

## 張一世

그러면圖書館關係事務를管掌하는文化局을다시살펴본다면이局에社會敎育,文化保存,藝術,體育의四課가있고圖書館關係는社會敎育課의所管으로되어있다.

社會敎育課에서管掌하는事務는成人敎育,國民思想의研究指導,青少年指導로되어있으며圖書館關係事務라는뚜렷한것은찾아볼수없게되어있다.

여기根本의矛盾이內包되고있는것이다.圖書館이무슨일을하는곳이며 어떻게運營하여야하는것인지,全然모르는사람들에依하여만들어진것임을證明하는것이다.

이事實만보더라도文敎當局者들이敎育面에對하여얼마나貧困한知識의所有者들이며, 특히圖書館이란것을理解치못하는것인가를 짐작할수있는것이다.

이렇게沒理解한사람들에依하여樹立되는圖書館政策은果然어떠한것일까? 이것은세삼스러이이야기할必要조차없을만치뻔한일이다. 마치國立圖書館은中央當局에서쫓겨난人士들의定配處였고左遷當한爲人들의避難處였다는것만을보드라도알수있는일이다.

이러한사람들이圖書館으로流配했을때그들의머리속에서는무엇을생각할

수 있을것인가? 圖書館이 어떠한 곳인지  
도 모르는 사람들이 圖書館 일을 어떻게  
볼수 있으며 圖書館運營을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그들 머리 속에서는 獅官  
運動以外의 아무것도 없었을 것은 뻔한  
일이다.

沒理解하고 無誠意한 人士들에 依하여  
움직여진 國立圖書館의 가는 길은 「大眾  
에의 奉仕」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使命」  
은 커녕 이와 正反對되는 걸이 있다는  
것은當然한 일이다.

위의 簡單한 一例는 圖書館의 真實한  
使命을 當局者들이 全然 理解치 못 한때  
서 온 結果인 것이다.

圖書館의 意義와 目的에 對한 簡潔한  
要約은 William S. Learned가 가장 要  
領있게 表現 했는데 그 줄거리를 紹介한  
다면 다음과 같다.

「…人類의 幸福을 增進케 하는 文明의  
進步에는 知識의 發見과 傳播의 두가  
지 作用이 緊要한 것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서로相伴하여 作用  
하는 것으로서 빛나는 知識이 널리 頒  
布되면 비로서 새로운 發見을 낳게 된다.  
안만 貴重한 知識이라도 널리 傳播  
되지 못한다면 一般에게 認識될 理致도  
없고, 結局에 가서는 새로운것을 낳기  
도 못하고 消滅할 것이다. 그러므로 傳  
播는 새로운 發見의 肉을 낳는 밭이라  
고 할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그러한 知識을 傳播  
하는 一種의 機關中에서 가장 重要한 位  
置를 차지하는고로 圖書館으로서의 存在  
價値가 크게 評價되는 것이다. 單只 圖書  
를 保存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18  
世紀以前의 思想과는 懸隔한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리기에 나는 圖書館의 意義와 目的을  
充分히 認識하는 사람들로써 圖書館을  
眞心으로 欣賞할수 있게하고 위에 引用한  
傳播의 使命을 効果있는 方法으로 하기  
爲한 政策을 樹立하여 이를 遂行할수 있  
도록 圖書館局을 新設할 것을 提言하는  
바이다. 이 圖書館局에서 하여야 할 일의  
몇 가지를 例로 들면서 이에 對하여過去의  
施策을 批判해 보는것은 意義있는 것  
이므로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한다.

#### 圖書館局의 役割

圖書館局에는 最少限度로 學校圖書館課  
大學圖書館課, 公共圖書館課, 特殊圖書  
館課의 四課를 두어야 할것이며 이밖에  
統括의 任 事務를 擔當할 總務課가 있어야  
할것이다. 各級 圖書館의 性格과 對象과  
運營方針이 각각 다른것은 말할것도 없으  
나 圖書館을 조금이라도 理解하는 사람이  
면 이 五課의 目的과 業務에 對한 區別은  
손 쉬운 일이다.

勿論 이러한 課의 組織단으로 모든 일  
이 組織의 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錯誤일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해 나가는데 있  
어서의 中樞의 役割을 하는것은 「사람」  
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기서 위에 이야기 한 各課에서  
해야 할 일을 일일히 說明할려고는 하지  
않지만 簡單히 例를 들면 學校 圖書館課  
같은 嘅서는 全國에 흩어져 있는 4,800의  
國民學校와 1,600餘個의 中高等學校의 圖  
書館을 둘봐야 할것이며, 特殊圖書館課  
에서는 大學 또는 公共圖書館을 除外한  
圖書館 例를 들면 官廳 圖書館이라든지 軍

關係圖書館，銀行各團體等圖書館에  
關註指導，監查를 해야하며 大學圖書館  
課는 研究圖書館으로서의 大學圖書館을  
그리고 公共圖書館課는 國立圖書館을 爲  
始하여 全國各地에 設立되어야 할 面立圖  
書館에서 부터 道立，市立圖書館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公共圖書館을 育成하여야  
하며 또 監查，指導를 해야할것은 말할것  
도 없는것이다.

이러한 圖書館들을 爲한 各課를 살펴보  
면 모두 各局의 어떤 課보다도 더 큰 일  
들을 맡게되는것이다. 國民 하나 하나가  
大學生이든 中學生이든 또는 公務員이든  
勞動者이든 또는 失業者이든 婦女子이든  
어느 누구나 圖書館과 關係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만큼 모든 國民은 다  
圖書館과 密接히 聯結되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에서는 圖書館事業을 學  
校라든지 道路 또는 水道같은것과 마찬가  
지로 市民들과 直接關聯되어 있는 重要한  
部門의 하나로 보고있다.<sup>1</sup> 이렇게 圖書館  
事業을 重要視하는 理由는 圖書館이 學校  
나 道路， 또는 水道에 놓지않게 國民들의  
社會的，教育的 水準을 向上시키는데 不可缺한  
存在라는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  
기때문이다.

이미 百餘年前인 1849에 뉴－罕－ 푸－ 一個  
州에서는 처음으로 圖書館法을 發布했고  
繼續하여 各州에서 이 法을 模倣하여 圖  
書館法을 制定하였다는것은 美國에 있어  
서의 오늘날의 發展을 이루하게된 原因이  
지만 마사츄－塞－州같은 곳에서는 1850  
年을 中心으로한 不過數年 동안에 圖書  
館에 關係된 法律만 60餘個를 通過시켰다  
는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市民의 知的水  
準向上에 努力하였는가를 能히 짐작할수

있다.

이러한 法의in 뒷바침과 아울러 國務省  
敎育局(Boarid of Education)의 役割 또  
至大하였다는것을 指摘치 않을수 없는것  
이다. 이 敎育局이 圖書館을 도울기 시작  
한것은 1870年頃부터이지만 特히 1876年에  
있어서의 이 敎育局의 貢獻은 그 後의 美  
國 圖書館史에 一大轉換을 가져올만큼  
큰 影響을 주었으며 이로서 美國에 있어서  
의 正常的이고도 希望的인 圖書館活動  
을 期約케되었던것이다. 이것은 同局에서  
全國的인 圖書館狀況에 對한 細密한 統計  
와 아울러 圖書館에 關係된 重要的 論說을  
發刊한事實이다.<sup>3</sup>

이와같은 圖書館에 對한 刺戟은 더욱  
圖書館活動에 拍車를 加했으며 各州에서는  
는 圖書館 監督局(Library Commission,  
또는 Library committee)을 設置하여 州  
內各 圖書館 事業의 監督，普及，改善 및  
保護에 當하였고，中央政府에는 圖書館 監  
督局(Board of Library Committee)을 두어  
美國全土에 걸친 圖書館 事業에 對한 最  
高의 行政的인 立場에서서 그 保護와 獎  
勵에 當하게 한것은 美國以外의 其他國家에  
서 그 例를 보지 못하는것으로서 括目할만  
한事實인것이다.<sup>4</sup>

이와같은 制度가 생긴지 15年동안에 美  
國의 圖書館事業은 大端한 發展을 보이고  
있으며 數字上으로 볼때 圖書館數 875에  
서 2,520이라는 急進的인 發展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위에 引用한 簡單한 事實은 우리의 圖  
書館 事業에 큰 光明을 던져 주고 있으며  
美國과 事情이다른 우리에게는 우리社會  
事情에 適合한 機關을 가지고 指導育成을  
해 나아갈때에는 빠른 時日內에 보다 나

은 發展이 있을것이라는 自信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몇 가지 重要한 것만을 추려서 簡單히 살펴 보고자 하는바이다.

### 1. 圖書館人에 對한 法的 保護

當局에서 해야 할 일은 一般 公務員과는 달리 圖書館關係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爲한 特別職制를 法律로써 制定하여야 하는 일이나, 이렇게 함으로써 一般 公務員과 區別을 하여 圖書館에서 일하는 사람 들에 對한 保護와 育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圖書館에서 다루는 일이 特殊한 教育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는 까닭에 法律로써 이들을 保護하고 있다.

아직 圖書館法 하나 없는 우리 實情으로서는 이보다 앞서 圖書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爲한 法制定이 더욱 必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方面의 特殊 教育을 받은 사람이 그 專門分野에서 一生을 바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되고 이로써 그 分野에 對한 真摯한 研究와 發展에 더욱 이바지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專門職을 養成하는 機關에 對하여는 다음에서 簡單히 이야기 하겠거니와 圖書館은 特殊教育을 必要로 하는 機關인 고로 지금 場景에 라도 圖書館에 關係되는 業務를 擔當한 一般公務員은 圖書館教育을 받은 人士 또는 多年間 經驗을 가진 사람들로써 代替되어야 할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더 效果를 얻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標準圖書目錄의 作成

各級 圖書館에 標準의 圖書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한 이야기지만 얼마 前에 女高生의 自殺事件이 있은 後이 原因에 對하여 여러가지 많은 論難이 있었으며, 그 中 특히 그 學生이 읽은 文學作品이 話題에 올랐고 뒤이어 青少年學生들에 對한 讀書指導問題가 新聞紙上을 번거롭게 한 일이 있다. 確實이 그 作品이 自殺動機가 되었는지는 나로서 斷定 할 수는 없으나 하여간 讀書에서 받는 影響이 매우 크다는 點에 對하여는 異論 할餘地가 없는 것이다.

특히 感受性이 第一 旺盛한 青少年들에 미치는 讀書의 影響을 세심스럽게 이야기 할必要가 없을 만큼 至大하다는 것은 단認定하는 事實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社會에 있어서 그들에 對한 讀書指導의 問題는 단지 學校에 있어서의 몇몇 擔任先生들의 問題가 아니라 우리 國民 全體가 熟考하여야 할 社會的 問題인 것이다.

民心은 解馳할 예로 解馳해지고, 社會秩序가 極度로 混亂한 이처럼 良心的인 圖書出版만을 期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社會相에 便乘하여 各樣 各色의 不良 圖書가 市場을 뒤흘리는 現狀을 가져오는 것은當然하다고 할 것이다.

讀書로서 받는 影響과 所得은 어디까지나 無形의인 것이고 우리 눈으로 그 效果를 볼수 있거나 차로 전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一般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이 웬만한 知識人們도 讀書에 對하여 그리 큰 關心을 가지지 않는것이 事實이지만 위에例를 든 그 女高生의 境遇를 본다면 젊은 子女를 둔 家庭의 父母는 勿論이지만 全

國의 鎭은 男女의 教育을 도맡은 文教部는 宜當 여기에 對한 適切한 對策을 세웠어야 할것임을 두말할 必要가 없을뿐 아니라 그 結果로서 나타난 여러가지 樣相에 對하여 마땅히 責任을 져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當局者는 이에 對하여 한마디 辯明도 없는것은 어찌된 셈일까? 個人의 讀書는 그야말로 自由란 말인가? 文教部는 責任이 없다는것인가?

여기에서 標準圖書目錄의 必要性이 切實하게 要請되는 것이다.

지금 一般家庭에서는 子女들에게 讀書를 勸하고 싶어도 勸할수 없는 實情에 있다. 하두 많은 不良圖書 가운데서 어떻개 해서 良書를 가려 냄것인가?

이것이 圖書館局의 各課에서 해야할 業務中의 하나인것이다. 美麗같은 安定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文教部 같은데에서 할 必要가 없는것임에도 不拘하고 州政府 같은데에서 承認한 圖書目錄中에서 學校 圖書館用圖書를 選擇하도록 하게되어 있는 것을 보면<sup>5</sup> 그만큼 圖書의 選擇에 慎重을期하고 있다는것과 同時に 그만큼 青少年의 讀書指導에 萬全을 期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우리의 實情은 더욱 時急하여 文教部가 아니고서는 到底히 이런 거창한 일을 效果있게 할수는 없는것이다.

大學設置基準令中圖書館 關係의 基準을 보면 學生一人當 圖書 몇 卷이라고 規定되어 있으나 이것은 時期的으로도 또 實質的으로도 아무 效果가 없는것이다. 또 中·高等學校 및 師範學校 設置基準令中 圖書館 關係部門을 보면 더욱 可笑롭기限り 있다.

이러한 矛盾에 가득찬 部門은 위에 이 애기하 目錄作成으로서 미루서 黑正 되게

이다.

그러나 이러한 目錄作成은 短時日에 될 수는 없고 또 一定한 期間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出版物이 나오는것이 限量이 없는것처럼 날이 흐름에 따라 이 事業도 繼續되어야 할것이다. 이 目錄이 順次의으로 나옴에 따라 讀書指導도 安心하고 할수 있고, 마음 놓고 子女에게로 勸할수 있는것은勿論 各級圖書館에 이것을 適用함으로써 基本의藏書를 이룩 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위에 이야기한 여러가지 理由로 말미아마 筆者의 所見으로서는 이 目錄作成의 業務야말로 가장 큰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勿論 이러한 標準圖書目錄과 아울러 國家的出版物 總目錄이 必要한것은 말할 것도 없는것이지만 이것 亦是 當局이 解決해야할 問題中의 하나이다.

### 3. 圖書館員의 教育

文教部 認可로서 正式으로 運營되고 있는 專門 司書 教育機關으로서는 現在 延世大와 梨花女大 二校 뿐이라는것은 周知하는바이다. 明年 봄부터 延世大 圖書館科卒業生이 社會로 蔽出될것이나 이의 數는 매우 微微하며 梨大 圖書館學科卒業生은 大學院 圖書館學科生 6名을 除外한다면 3年後인 1963年 봄에야 비로서 卒業生이 나오게 된다. 이라고 보면 專門教育을 받은 司書는 그 數가 當分間은 매우 적은 數字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現在 勤務하고 있는 司書의 再教育方法으로는 圖書館協會 主催의 短期講習會가 1年에 1回程度 있고, 延大에서 放學期間을 제외하 講習 程度이다.

\*\*\*\*\*

위에 이야기한 司書의 教育 現況은 嘅 우 遲遲不進한 狀態에 있으되, 아무런 綜合的인 計劃 위에서 案出된 것도 아니고 또 綱羅된 것도 아닌 까닭에 그리 큰 効果를 얻우지 못하고 있는것이 事實인 것이다.

圖書館이 가지고있는 모든 文化財는 全部 圖書館員의 손을 거쳐서 icro서 活用된다. 充分한 活用을 為하여는 活用할수 있도록 充分한 准備가 必要하다. 准備가 되지못한것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圖書館員의 教育問題가 起起된다. 各 圖書館에서는 없는 가운데에서도 圖書館費를 째 내어서 圖書購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購入한 貴한 圖書들을 充分히 活用할수 있도록하는 여려가지 過程에 對해서는 全然 理解가 없다. 受入된 圖書는 一定한 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그 圖書가 지닌 內容을 充分히 發揮못하는것이다. 이러한 手續와 活用을 充分히 할수 있는 사람은 專門教育을 받은 圖書館人뿐인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圖書館 專門職養成이 美國같은데에서 嘅 우 強調되고 있다.

大學이나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沒知覺한 人士들로 因하여 얼마나 많은 貴重한 文化財들이 잡을 자고 있는지는 圖書館을 몇 번 드나든 사람다면 곧 알수 있는일이다. 筆者が 보기에는 거의 藏書量의十分之九以上이 死藏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推測하고 있다.

그만큼 圖書館員의 教育은 圖書館資料의 活用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大學圖書館 또는 特殊, 公共圖書館을 莫論하고 이 教育問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時急하고도 重要한 問題中의 하나인것이다. 많은 資料를 購入할수 없는 우리의 事情이 더욱 專門教育을 받은 圖書館員을 要求하고 있다. 專門教育을 받아야 圖書館本來의 使命을 充分히 살려서 効果있는 運營을 해 나아갈수 있다는것은 이미 뚜렷이 證明되고 있는 일이다.<sup>7</sup> 그러므로 綜合的 計劃에 立脚된 圖書館員의 再教育 問題와 더불어 앞으로의 各級 圖書館 發展에 副應하는 專門司書養成에 注力하여야 할것이다.

## 結論

위에 들은 몇가지 例는 圖書館局에서 다루어야 할 일中의 不過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그 部分에 對하여 좀더 專門的인 檢討가 加해져야함은勿論이지만 現在 圖書館 關係를 主管하고 있는 文教部 自體에서 이에 對한 깊은 理解가 없이는到底히 實現을 볼수는 없는 일이다.

多幸히 第二共和國이誕生한以後 實質한 教育者들에 依하여 文教部가 움직여지게 된것은 icro서 이제부터 正常的인 發展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굳게 믿을수 있도록 하여주고 있거니와 그분들이 모두 圖書館의 役割과 使命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는 人士들이라는것은 더욱 우리들 圖書館과 直接 關係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히 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圖書館 發展에 를 前進이 있으려라는것을 期待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政府機構는 앞에서도 暫間이야기 한바와 같은 많은 矛盾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지금 政府機構를 改編하기 為하여 貞摯한 討議가 繼續되고 있다고한다. 此際에 關係官들은 專門家의 助力を얻어 根

本的인 改革을 斷行하기를 強力히 要請하는 바이다.

圖書館人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懇切히 바라는 바는 過去와 같은 過誤를 다시 밟지 않도록 留意하여 주기를 바라며 그와 同時에 우리나라의 劃期的인 文化向上을 為하여 果敢한 施策이 있기를 衷心으로 期待하는 바이다.

1. Joeckel, Carleton B. A national plan for public library service, by C. B. Joedsel And Anry Winslow. Chicago, A. L. A., 1948. p. 60
2. Hessel, Alfred. A history of libraries, to. by Reuben Peiss. New

Brunswick, N. J., 1950. p. 102

和田萬吉 圖書館史

3. 和田萬吉 "
4. 毛利宮彥, 圖書館學序論 P. 33—34
5. Fago, Lucile F. the library in the school th ed. Chicago, A. L. A. 1947, p. 353—354
6. Burgess, Robert "미국의 도서관적 교육"도협월보 v.i.no3.p. 7—9. 1960 P.7—9. 5月號.
7.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New York, H. W. Wilson, 1944 p. 252—254  
(筆者 梨大圖書館學科師講)

##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著 者 金斗弘 (慶南高等學校司書教師)

趙載厚 (慶南女子高等學校司書教師)

崔大林 (釜山師範學校司書教師) 外二人

發行處 慶尙南道教育研究所

現職司書·司書教師에 限하여 小部數量 頒布합니다 (頒賞費圖 2,000圖)  
協事務局에 現品이 있습니다.